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안 설명

존경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3선거구

임만균 의원입니다.

오늘 본 의원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」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
합니다.

개정된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」(법률 제
17484호, 2021. 2. 19. 시행) 및 같은 법 시행령(대통령령
제31031호, 2021. 3. 23. 시행)은 공공임대주택을 10퍼센트
이상 20퍼센트 미만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용적률을 임대
주택 비율에 비례하여 시·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
있습니다.

이에 본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해당 법령에서 위임한 용적률
완화 산정방법을 정하고, 나아가 부설주차장 설치대수를 완화
받을 수 있는 요건인 노외주차장의 사용권 확보방법 등을
정하고자 합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
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
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